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 명예회복
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동행명령권 신설 및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부마항쟁 보상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('20.5.20 국회 본회의 통과)으로,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동행명령 불응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세부 절차 규정

- 1)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·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
- 2) 위원장은 과태료 부과 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·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
- 3) 위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·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 산정
- 4)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,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①위원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·과태료금액·납부기간·수납기관·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·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① 위 원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 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·과태료 금액·납부기간·수납기관·이 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 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.</u> <u>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 술·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u> <u>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</u> <u>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 의 규정으로 정한다.</u>
<u>제32조 (생 략)</u>	<u>제33조 (현행 제32조와 같음)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259